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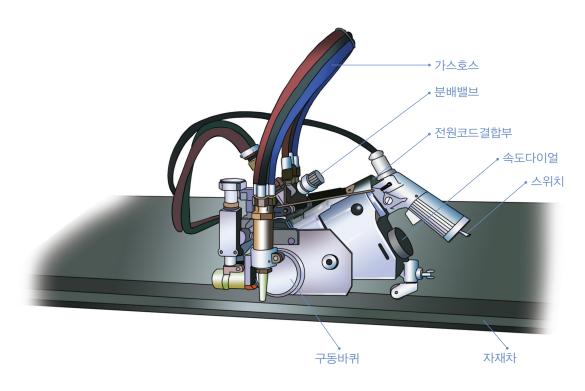
자동가스절단기 안전작업



Automatic Gas Cutter

자동가스절단기란?

자동가스절단기(Automatic Gas Cutter)는 동력에 의해 토치(torch)를 자동 이동시키면서 강판을 직선, 곡선, 원형, 기타 임의의 형상으로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기계로서, 절단면이 깨끗하고 절단 속도가 빠르며, 산소와 가스의 소비량도 적다.



자동가스절단기 각부 명칭

가스조절장치

- 절단에 필요한 고압산소, 예열산소, 연료가스를 압력조정기를 이용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준다.
- CNC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운전 및 조작반에 의한 수동조작으로 산소 및 연료가스를 제어한다.

● 토치 UP & DOWN 장치 ●-

- 철판 두께에 맞게 토치의 상하 조절이 가능한 전동형 토치로 개별토치의 상하조절 및 전체 토치의 상하조절이 가능하다.
- 물 분사장치, 자동점화장치 등을 부착한 토치도 사용되고 있다.

자동가스절단기 안전작업

주요 위험요인

♥ 작동 중인 절단기에 충돌 및 협착위험

절단작업 중인 절단기 본체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하강하는 헤더(Header)에 의한 협착위험이 있음

화상위험

절단 시 모재의 용융 철이 튀어 올라 안면부에 화상을 입을 위험

🔷 화재 · 폭발위험

토치의 분사구가 막힐 경우 저압인 가스라인을 통해 가스통으로 불꽃이 역화되어 화재 · 폭발위험

♥ 가스 및 산소 누출 위험

토치의 접합부, 절단 팁의 너트 체결부, 가스나 산소호스 균열 등에 의해 가스나 산소가 누출되어 절단정반 내부에 체류될 경우 점화원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안전대책

• 작동 중인 절단기와 충돌방지

- 자동가스절단 작업 장소에는 차광판 등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유해광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토록 조치한다. 또, 칸막이에 절단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관계자외 출입 금지 조치

• 화상위험 방지

- 안면보호를 위한 보안면,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기름 묻은 장갑은 산소와 접촉 시 화재를 일으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착용 금지

• 화재 · 폭발위험

- 토치 분사구 막힘, 가스 소진에 의한 압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역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화방지 장치를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설치
- 역화현상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

고압산소밸브 차단 → 저압산소밸브 차단 → 가스밸브 차단 → 절단기 상태 확인

- 절단작업 시 절단정반 내부에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를 실시하면서 작업
- 자동가스절단 작업 장소에는 고온의 스패터(Spatter)와 슬래그(Slag) 등 불꽃이 비산하므로 불받이포 및 이동식 소화설비 비치

• 가스 및 산소 누출 방지

- 토치의 접합부 균열 등 이상발생 여부 확인
- 토치 퀵 커플러가 마모된 것은 사용 금지
- 절단팁, 너트 체결부가 확실히 체결되어 있는지 작업 전 확인
- 밸브 마모로 인한 가스 누출, 호스 손상으로 인한 가스 누출 등을 방지를 위해 주기적 점검 실시



재해사례: 바지선 내부 용접작업 중 폭발

개요

해상에서 수리 중이던 바지선의 주방에서 산소절단기(LPG-O2)로 용단·용접작업 중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발라스트 탱크(Ballast Tank)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인화성증기에 인화되어 바지선이 폭발



• 환기 미실시

바지선 맨홀이 대부분 개방된 상태였으나 에나멜 희석제의 용제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탱크 내부 및 데크하우스 바닥에 체류

- 유기용제 증기가 체류한 상태에서 인접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데크 하우스 주방 내에 Tank와 연결된 맨홀이 개방되어 있어 Tank로 부터 유기용제 증기가 화기 작업이 행해지는 주방 내부까지 쉽게 유입
- **화기작업에 대한 안전의식 부족** 도료(유기용제)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도장 및 용접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화기작업 안전절차 미준수

예방대책

• 환기실시 후 용접작업 실시

에나멜 희석제의 용제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탱크 내부 및 데크하우스 바닥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실시하고 가연성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실시

- 화기작업안전 지침 제정
 - 화기작업 전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 작업지휘자 선정 등을 포함하는 화기작업안전지침을 제정하여 준수토록 조치
- 화기작업 승인 철저
 화기작업 착수 전 승인 내용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작업 허가





안전수칙

- 작업구역 주변에에 가연물이 있는지, 화기작업과 병행해서는 안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업시작 전에 확실히 확인한다.
- 밀폐구역 내에 환기는 충분한지 확인하고 절단 토치, 가스호스, 산소호스 등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화설비, 불티 비산방지포, 토치 등 화재에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 절단 슬래그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시하면서 작업한다.
- 절단장 근처에 불티가 비산되어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불받이포를 사용한다.
- 화염 분사의 막힘, 팁끝과 부재 충돌 또는 화구나 각종 체결부의 죄임 불량으로 가스가 샐때는 역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역화방지시 조치 요령을 숙지해 둔다.
- 지정된 안전통로로 통행하는 등 발빠짐에 주의한다.
- 자동절단기 주변 및 진행방향으로 호스, 케이블 등이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 토치의 모든 밸브를 잠그고, 산소통 및 가스통의 밸브도 잠근다.
- 다른 작업자를 위하여 바닥에 방치된 호스, 부재, 절단 슬래그 등을 정리 정돈한다.



관련 범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33조 (가스용접 등의 작업)

- 제234조 (가스등의 용기)
-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제241조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 제243조 (소화설비)

- 제244조 (방화조치)

-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제246조 (소각장)
- KOSHA CODE F-2-1999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